

# 한국제품인정기구

## KAS: Korea Accreditation System

자료제공 · 기술표준원 적합성계획과

### □ 배경 및 필요성

- WTO 체제 이후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무역상대국과의 상호인정협정(MLA: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) 체결은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의 효율적 수단임
  - 국제무역에 있어 기술장벽(Technical Barrier to Trade)이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무역장벽임.
- 이러한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의한 제품인정기구 설치 및 제품인정체제 구축이 긴요함.
- 국가간 상호인정의 최종 목표는 제품으로써 기술표준원내에 제품인증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제품인정기구(KAS: Korea Accreditation System)를 설치하여 내실있는 제품인정체제를 확립하고,
  - 국제인정협력기구(IAF: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), 태평양지역인정협력기구(PAC: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) 등 국제협력에의 능동적 대응으로 국제동향에 면밀히 대처하고 세계 각국과의 제품분야 상호인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

### □ KAS 개요

- KAS는 국제기준(ISO/IEC Guide 61)에 의한 제품분야 국내 유일의 인정기구로서 제품인증기관이 국제기준(ISO/IEC Guide 65)에 따라 적합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증(인정)해주는 역할을 수행
-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품인증기관 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내에 한국제품인정기구(KAS: Korea Accreditation System) 설치·운영
- 기술표준원장은 인정기구의 장으로서 인정기구를 대표하며 인정업무를 총괄
- 기술표준원내의 적합성평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인정기구의 사무국장으로서 인정기구 사무국 업무 관장

### □ KAS의 업무

- 인정기구의 품질시스템 구축 및 운영

-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
-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
- 인증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
-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처분
- 평가사의 등록 및 관리
-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
-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표준화
-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협력
- 기타 인증기관 인정업무 수행
-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

**□ 운영기준**

- “국가표준기본법” 및 “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요령”에서 정한 운영기준
-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서 정한 “인증/등록기관의 평가 및 인정을 위한 일반요구사항”과 국제인정협회의(IAF)에서 정한 지침문서와 기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
- 인정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품질문서와 방침 및 절차를 유지·관리

**□ 위원회 구성**

- 인증기관 인정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·심의하기 위하여 인정기구의 장 소속으로 인정심사위원회,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 설치

○ 위원회 종류 및 역할

종 류	역 할
인정심사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증기관 인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인정마크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ul>
인정제도운영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정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평가사 자격부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평가사 자격부여, 등록,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ul>

종 류	역 할
교육훈련운영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교육기관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ul>
기술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야별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인정분야의 세부분류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○ 기타 현장평가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</li> </ul>

- ※ 운영위원회는 인정제도운영위원회와 교육훈련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·운영
- ※ 기술위원회는 제품분야별로 구성하되, 기술발전 및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회 구성
- ※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정과 관련된 세부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지문하는 전문 위원회 설치

□ 품질문서의 제정 및 운영

- 인정기구 운영과 품질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품질문서
- 이 요령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해석기준 또는 지침
- 공통 또는 특수분야의 전문 기술기준 또는 지침
- 인정기구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에 관련된 지침
- 기타 인증기관 인정업무에 필요한 지침

□ KAS 평가사

- 인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정기구 사무국에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충분한 공무원 확보
- 평가사의 종류 및 역할

종 류	역 할
선임평가사 (Lead Assessor)	평가팀의 구성원 선정작업 지원, 평가계획의 수립, 평가반 리드, 평가수행과 관련한 최종결정을 하며,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제출하는 평가사를 말한다.
평가사 (Assessor)	인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특수분야에 대하여 인정신청자의 제품인증 시스템 및 시험·검사 등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사를 말한다.
기술전문가 (Technical expert)	해당분야 평가사로 자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, 특수분야에 대한 기술 자문을 위하여 참여하는 평가팀 구성원을 말한다. 이러한 기술전문가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평가사와 동행하여야 한다.